#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04 발의연월일: 2024. 12. 24.

발 의 자:김미애·김 건·박상웅

김기현 · 김정재 · 서지영

강선영 · 김선교 · 김상훈

박수영 · 김예지 · 이종배

이인선 • 이성권 • 김종양

조정훈 • 최수진 • 나경원

이헌승 · 최은석 · 박준태

주진우 · 송석준 · 진종오

권영진 · 서범수 · 주호영

조승화 • 정동만 • 임이자

박성훈 • 조은희 • 김도읍

이만희 · 김승수 · 이달희

안철수 • 백종헌 • 정성국

조경태 · 김희정 · 유용원

정연욱 • 곽규택 의원

(4491)

## 제안이유

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

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·협박·감금·강제노역·성폭력 등을 당한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·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(안 제3조).
- 다.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, 그 밖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있으며,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(안 제8조 및 제11조).
- 라.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, 동행명령장 발부, 증거보전의 특례,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(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).
- 마.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 규명 활동을 하되.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(안 제16조).
- 바.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, 의료

지원금, 생활지원금,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(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).

사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7조).

법률 제 호

#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부산 덕성원 피해사건"이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·협박·감금·강제노역·성폭력 등을 당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인하여 사망, 행방불명, 상이, 정신적 장애 등에 이르게 된 사건을 말한다.
  - 2. "피해자"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
  - 3. "유족"이란 피해자의 배우자(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직계존속·비속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형제자매를 말한다.

#### 제2장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

- 제3조(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) ①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·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 - 1.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
  - 2.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 정
  - 3.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  - 4. 제23조에 따른 보상금, 제24조에 따른 의료지원금, 제25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
  - 5.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
- 제4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부산 덕성원 피해자 대표를 포함한 인권 및 복지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

-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소위원회의 구성·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6조(위원회의 회의)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 재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사무국의 설치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.
  -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.
  -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 -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

- 제8조(진상규명의 신청)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, 그 밖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-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신청의 방식)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.
  - 1.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
  - 2.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
  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신청의 각하결정)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

할 수 있다.

- 1.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
- 2.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. 다만,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.
- 제11조(진상규명 조사개시)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.
  -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있다.
- 제12조(진상규명 조사방법)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신청인,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
- 2. 신청인,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
- 3. 신청인, 피해자 및 참고인, 그 밖의 관계 기관·시설·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
- 4. 관계 기관·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 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
- 5.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사전에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진상규명 사건의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관계 기관·시설 또는 단체(이하 "기관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「형사소송법」 제110조 또는 제112조에 해당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13조(동행명령)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·주거,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, 동행할 장소, 발부연월일,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・날인하여야 한다.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때에는 인상, 체격,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수 있다.
  - ③ 동행명령장은 이를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집행한다.
  -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에게 집행하도록 한다.
  -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(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)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.
- 제14조(증거보전의 특례)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

장에게 압수·수색, 검증,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- 제15조(청문회)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, 증인,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 ·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.
  -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의 관련 규정(제4조제2항·제3항,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회"는 "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"로, "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" 및 "국정감사나 국정조사"는 "진상규명"으로, "본회의", "본회의또는 위원회" 및 "해당위원회"는 "위원회"로, "의장 또는 위원장" 및 "의장"은 "위원장"으로, "국회규칙"은 "위원회의 규칙"으로 각각 본다.
  -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진상규명기간)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상규명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진상규 명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.
- 제17조(진상규명결정)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.
- 제18조(진상규명불능결정)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제19조(결정통지 및 이의신청)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각하결정, 제11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, 제17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, 제18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피해자, 제8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과 제12조에 따른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·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한다.
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)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진상규명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21조(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.
  -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수행할 수 있다.

제4장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치

제22조(피해자 명예회복)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와 그 유

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.

- 제23조(보상금) 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 이 경우 그 생 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  - ② 유족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.
- 제24조(의료지원금) ①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·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(이하 "의료지원금"이라 한다)을 일시에 지급한다.
  - ②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.
  -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5조(생활지원금) ① 피해자가 노령·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(이하 "생활지원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6조(보상금등의 지급 신청)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23조에 따른 보상금, 제24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제25조에 따른 생활지원금(이하 "보상금등"이라 한다)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- ③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(심의와 결정)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.
- 제28조(결정서 송달)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9조(재심의) ①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 자 또는 그 유족은 제28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

- 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준용한다. 이 경우 제27조 중 "90일" 및 "120일"은 각각 "60일"로 본 다.
- 제30조(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) ① 제28조에 따라 결정서정 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.
  -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1조(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)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 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- 제32조(조세면제)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제33조(보상금등의 환수)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
  - 2.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

- 3.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과 관련없이 사망 또는 행 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
-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- 제34조(시효)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 다만,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.
- 제35조(부산 덕성원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)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부산 덕성원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6조(기부금품의 접수) ① 위원회는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37조(기념사업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  - 1. 기념관 건립
  - 2.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·보존·관리 및 전시
  - 3. 위령공원 조성
  - 4.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38조(불이익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  - ②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원회의 피해자 결정 및 보상금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
### 제5장 보칙

제39조(비밀준수 의무)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,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,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, 위

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 보·문서·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.

#### 제6장 벌칙

- 제40조(벌칙) 제39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4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술을 거짓으로 한 참고인이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
  - 2.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
 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·기피한 자
 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
  - 5. 제38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위원회의 위원장,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,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 제정,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)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.